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53057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김태원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심용확, 황영규

변론 종결2019. 3. 22.

판결 선고2019. 4. 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2017. 11. 29. 접수 제635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아래 표의 각 순번 기재 신용보증약정을 '제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1	2012. 11. 21.	D	190,000,000원	2013. 11. 20.(2018. 11. 16.로 최종변경)
2	2013. 12. 5.	E	200,000,000원	2015. 12. 4.(2018. 11. 30.로 최종 변경)
3	2013. 12. 17.	F	100,000,000원	2015. 12. 17.(2018. 12. 14.로 최종변경)
4	2014. 3. 5.	G	810,000,000원	2022. 3. 4.(2021. 12. 20.로 최종변경)
5	2014. 9. 16.	H	360,000,000원	2022. 9. 16.
6	2015. 2. 10.	I	170,000,000원	2015. 6. 10.(2018. 6. 9.로 최종변경)
7	2016. 4. 25.	J	1,260,000,000원	2017. 4. 25.(2018. 4. 25.로 최종변경)

2) 주식회사 C은 ① 2012. 11. 21. 제1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200,000,000원을, ② 2013. 12. 6. 제2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200,000,000원을, ③ 2013. 12. 23. 제3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100,000,000원을, ④ 2013. 12. 10. 제4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900,000,000원을, ⑤ 2014. 10. 14. 제5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400,000,000원을, ⑥ 2015. 2. 10. 제6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200,000,000원을 각각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⑦ 2016. 4. 25. 제7차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K은행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주식회사 C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해지되지 않은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 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추가보증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부대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4)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B이 도주하는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은 2018. 1. 9.

중소기업은행과 K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8. 4. 27. 제7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K은행에 대출원리금 1,272,525,780원(=

원금 1,260,000,000원 + 이자 12,525,780원)을, 2018. 5. 4. 제1차 내지 제6차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306,112,867원(= 원금 1,290,000,000원 +

이자 16,112,86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7,889,615원이다.

다.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B은 2017. 10. 2. 주식회사 C의 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20,000,000원으로

하고, B의 K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00,000,000원(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은 피고가

승계하며, 잔금 110,000,000원은 2017. 11. 24.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2017.

11. 29. 접수 제6353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2) 피고는 B에게, 2017. 7. 28. 20,000,000원을, 2017. 9. 16. 20,000,000원을, 2017. 12. 14.

9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7. 11. 29. B의 K은행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였다.

라. 원고와 주식회사 C 및 B 사이의 인낙조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C과 B를 상대로 '주식회사 C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6,538,262원 및 그중 1,272,525,780원에 대하여는 2018. 4. 27.부터, 1,306,112,867원에 대하여는 2018. 5. 4.부터 각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주식회사 C과 B은 2018. 8. 31. 원고의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①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4. 27. 및 2018. 5. 4.이 되어서야 B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나,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0.

2.로부터 불과 약 2개월이 지난 2018. 1. 8.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B의 도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과 K은행의 위 각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주식회사 C의 대부분 매출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공계약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 주식회사 C이 2017. 12. 18. L단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조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③ 실제로 원고가 2018. 4. 27. 및 2018. 5. 4.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갑 제14 내지 19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172,457,125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그 소극재산은 적어도 6,879,549,262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적극재산 합계 : 172,457,125원(= 137,500,000원 + 23,149,500원 + 3,251,625원 + 8,556,000원)

① 이 사건 부동산 : 137,500,000원(= 237,500,000원 - 1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37,500,000원¹⁾ 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00,000,000원 부분은 B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

② 공주시 M 대 610m²: 23,149,500원 [= (최소가격 20,130,000원 + 최대가격 26,169,000원) × 1/2]

③ 공주시 N 임야 377m²: 3,251,625원 [= (최소가격 2,827,500원 + 최대가격 3,675,750원) × 1/2]

④ 공주시 ○ 임야 992m²: 8,556,000원 [= (최소가격 7,440,000원 + 최대가격 9,672,000원) × 1/2]

⑤ 강원도 횡성군 P 대 986.9m²: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그러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위 토지 및 강원도 횡성군 P 1동 건물에는 Q를 채무자로 한 R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합계 6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제1순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 제2순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토지 및 건물의 시가 합계액은 최대 505,869,500원(= 위 토지의 최대가액 128,297,000원 + 위 건물의 시가 377,572,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R 주식회사의 Q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채권최고액 합계액 60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액으로 보아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결국 위 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 505,869,500원이 위 피담보채권액 6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B 소유의 위 토지는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극재산 합계 : 6,879,549,262원(= 2,586,528,262원 + 3,002,500,000원 + 427,474,000원 + 50,000,000원 + 98,447,000원 + 650,000,000원 + 64,600,000원)

① 원고에 대한 채무 : 2,586,528,262원

- ② 산업은행에 대한 2015. 6. 30.자 채무 : 3,002,500,000원
- ③ K은행에 대한 2015. 11. 30.자 채무 : 427,474,000원
- ④ K은행에 대한 2017. 4. 6.자 채무 : 50,000,000원
- ⑤ S회사에 대한 2017. 6. 23.자 채무 : 98,447,000원
- ⑥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2016. 11. 18.자 채무 : 650,000,000원
- ⑦ L단체에 대한 2015. 3. 20.자 채무 : 64,600,000원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나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T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②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는바 주식회사 C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식회사 C이 L단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을 받은 2017. 12. 18.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이사인 B이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④ 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2017. 12. 14. 송금받은 90,000,000원은 같은 날 전액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출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적정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만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B의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은행, T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1.경부터 2017. 7.경까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는 2017. 12. 19. 주식회사 U(변경 전 '주식회사 V'을 말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주식회사 U의 사내이사 W와 감사 X이 모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가 대표인 주식회사 U와 B이 대표인 주식회사 C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공인중개사의 관여도 없이 피고와 B 사이에서 작성된 점, ④ 피고는 B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9.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와 B 사이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Y와 Z는 2017. 12. 13. ATM을 통해 자신들의 계좌로 현금 합계 90,000,000원 가량을 입금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그 다음 날인 2017. 12. 14. B에게 90,000,000원을 송금한 것인바, 피고가 잔금을 마련한 출처 및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혜정

판사정치훈

판사최동환

별지

1) 이하에서는 위 각 부동산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다.